

2021년도 뿌리기업 자동화·첨단화 지원사업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구축과 보급·확산의 일환으로 『뿌리기업 자동화·첨단화 지원사업』 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3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·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

1. 사업개요

-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·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

* 최근 3년간('18 ~ '20) 뿌리기업 자동화·첨단화 지원사업에 既 참여한 수혜기업 지원 불가

지원분야 및 규모

- (공정자동화)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,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(H/W지원)

구분	예산	지원과제	지원한도	지원기간
공정자동화	17억원	17개 내외	총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	9개월 이내

*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○ (보급·확산) 기 구축 된 우수한 자동화 설비를 절감된 가격으로 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·확산 연계

- 신규 설비제작,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(문제점, 애로사항 등)를 제거하여 구축 효율화 지원

구분	예산	지원과제	지원한도	지원기간
보급·확산	3억원	6개 내외	총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	9개월 이내

*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3. 대상과제

○ (자동화·첨단화) 자유공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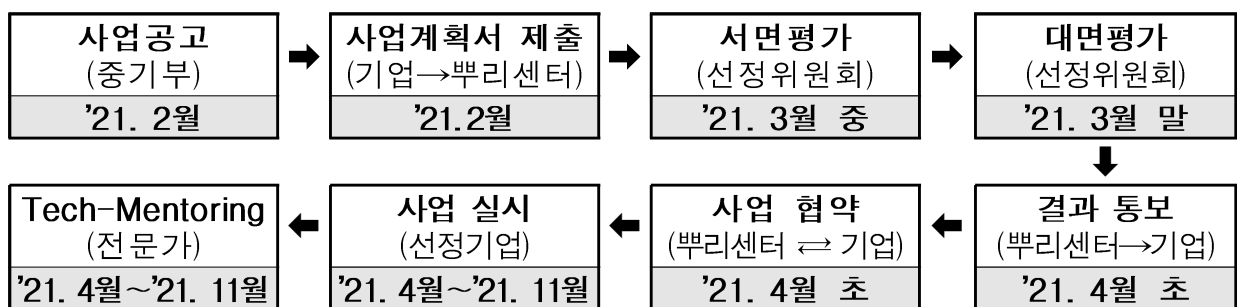
* 첨부 1. 뿌리기업 자동화·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

○ (보급·확산) 지정공모 (RFP(제안요구서), 성과사례집 참조)

* 첨부 2.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·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

4. 선정절차 및 방법

□ 선정절차



□ 선정방법

○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(1.5배수) 및 대면평가

○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
□ 선정기준

- (설비적정성) 생산성 향상 정도,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,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
- (사업추진력) 투자능력, 매출성장성,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
- (계획구체성) 사업목표, 사업비, 인력·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
- (공정·작업·유사성)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·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, 공정, 작업 유사성 등 평가
- (일자리평가)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·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(20%)에 반영
(신청 후 전용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), [별첨2] 참고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'21. 2. 3.(수) ~ 3. 3.(수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온라인접수 후 신청서류 제출(방문 혹은 우편제출)
 - (온라인접수)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(www.root-tech.org)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(①~⑥) 온라인 제출
 - (신청서류 접수처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'뿌리기업 자동화·첨단화 지원사업' 담당자 앞 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
□ 신청서류

- ① (필수) 사업계획서 2부 (원본 1부, 사본 1부)
- ② (필수) 최근 3년간('18 ~ '20년) 재무제표 각 1부 (사본, 원본대조필)
- ③ (필수) 뿌리기업 확인서 1부 (사본) (뿌리기업 확인서 문의처 : 02-2183-1644)
- ④ (필수) 중소기업 확인서 1부 (사본)
- ⑤ (필수)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(원본)
- ⑥ (선택) 가점관련 증빙서류 1부 (사본)

□ 문의처

-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
Tel (02-2183-1623) / E-mail (ppurisc@kitech.re.kr)

6.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

- 뿌리기업 명가*,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**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*** 가점(3점)
 - * 뿌리기업 명가 :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
 - **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: 근무/복지환경, 경영안정성,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
 - *** 뿌리기술 전문기업 :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
-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(3점)
 - * 수출실적증명서: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(직접)
 - **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: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(간접)

7. 지원제외 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 등)가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 다만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
-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 - 다만,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,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별첨2. 일자리(고용영향)평가 평가항목

구 분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한도	비 고
합 계			-20~100	
I. 일자리 양	1. 고용증가	가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	70	가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)과 나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)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
		나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		
II. 일자리 질	1. 성과공유	가. 미래성과공유 협약 (+10)	1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
		나. 내일채움공제 (+5) 다. 청년내일채움공제 (+5) 라. 우리사주제도 운영 (+5) 마. 스톡옵션 운영 (+5)	10	
	2. 근로환경	가. 정규직 전환 (+10) 나. 근로시간 단축 (+10) 다. 가족친화인증 (+5) 라. 청년친화강소기업 (+5) 마. 노사문화우수기업 (+5) 바. 인재육성형중소기업 (+5) 사.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(+5) 아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(+5)	10	
III. 고용질서 준수	1. 법령 준수	가. 고액.상습 임금체불 (-10) 나.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(-10)	-20	